

# 전기제품 PL상담센터 발표

지난 3월중 이루어진 PL상담건수는 모두 28건이었으며, PL상담록과 제품별 회의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안을 발췌하여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물론 소비자 여러분의 많은 참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2006. 3. 1~3. 31)

일자	상담품목	상담방법	상담 내용	조치 사항
3.3	배선기구	내방	주로 화재의 원인이 부품에 있는데, 보상책임을 부품업체에 전가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사전 계약서 작성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것
3.8	자동세정 건조식변기	내방	중국에 자체공장이 있는데, 한국에서 PL법 관련 사고시 배상하면 나중에 중국공장에서 책임져야하나?	계약서 작성시 서로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아야함
3.13	주서기	전화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다가 소비자가 임의로 개조한 다음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은?	이 경우는 PL법에 저촉이 안됨
3.17	전선	전화	납품받는 업체에서 PL보험가입 및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품업체에서 책임지라는 계약서 강요	부품업체와도 기본계약을 철저히 하여 문서로 서로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아야함.
3.20	라디오 수신기	내방	대형 양관점 납품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약관형태의 강제 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 경우어떻게 하여야 하나?	공정거래 위원회,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조정이나 기본 계약서 작성요령 검토중
3.22	전기매트	전화	외국에서 사온 전기제품은 사고 발생 시 PL법에 해당되는지?	국내 PL법에는 해당 안됨
3.27	배선기구	내방	완제품 제조업체와 부품업체의 책임 한계는?	보험/피해보상(책임한계)
3.28	전기매트	내방	- PL보험과 관련하여, 후에 구상권 획득권 - 사용상 주의사항 작성의 애로점	- 계약서를 작성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PL보험 가입 권유 - 품목별 협의회 차원에서 검토중